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9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등록대상동물 취득 시 사전 사육교육 이수 의무화 등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학대·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미 주요 국가들은 보호자의 책임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부 지역의 보호자 역량 검증,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육 및 시험 제도, 프랑스의 입양 전 책임 확인 및 숙려기간 제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판매·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등록대상동물 취득 시 사전 사육교육 이수 의무화 등(안 제16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함)을 이수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 또는 기증할 때에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법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교육, 동물 생산업, 동물수입업 등 영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 등 일부 교육 규정¹⁾을 두고 있으나,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는

- 1)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맹견의 관리)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2조(교육)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안전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²⁾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취득 단계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2025년에 실시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5%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요 반려동물 입양 경로와 개정안의 사육교육 이수 의무화 대상 간의 차이가 존재함.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육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의 확인은 동물생산업자·

2) ① 전체 가수 중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9.2%(출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국가데이터처)

② 연간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마리(출처: 2025년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③ 동물학대 신고, 2025년 6,545건으로 연간 6000~7000건 발생(출처: 경찰청)

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동물생산업자등”이라 함)에게만 부과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인 간 분양·개인 간 온라인 직거래 등 동물생산업자등 외의 경로를 통해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양 경로 중 지인을 통한 분양(유료·무료 합산), 개인 브리더 등을 합산하면 전체 입양 경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확인 의무 규율 대상이 실제 반려동물 입양 경로의 상당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한 유기·학대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반려동물 입양 경로별 현황 】

연번	입양 경로	비율	교육 이수 확인 의무
1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35.9%	×
2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 구입	28.7%	○
3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0.1%	×
4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	9.0%	×
5	동물보호시설 입양	8.8%	○
6	개인 브리더	6.7%	×
7	기타	0.8%	△

※ 출처: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생산업자등 외의 경로를 통해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육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그 확인 주체 및 확인 방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개정안의 과태료 조항은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한 동물생산업자등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육교육 이수 의무는 취득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임에도 그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취득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동물생산업자등 외의 경로를 통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과태료 조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한 자, 나아가 동물생산업자등 외에 사육교육 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기증·분양·판매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여부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개정안은 사육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등록대상 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³⁾ 상 등록 대상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등의 개에만 해당되어 고양이, 토끼 등 개 이외의 반려동물 입양자는 사육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반려동물의 유기·학대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 의무 대상을 등록대상동물 취득자에 한정하지 않고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취득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에서도 반려동물의 입양 전 의무교육이 추진과제로 설정된 바 있으나 사회적·행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연

3)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 6. 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된 바가 있고,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에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즉각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연동 등 행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적용 대상·교육 내용·확인 절차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육교육’이 아닌 ‘입양 전 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교육 이수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서 ‘등록대상동물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이수 여부 확인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힘.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육교육 실시 또는 위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만, 개정안은 사육교육의 실시·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⁴⁾하고 있고,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사육 경력 및 숙련도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육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사육교육의 대상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육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5) 국회예산정책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6. 5. 12.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 의사,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 또는 기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

④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 략)

2.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육교육의 실시·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

-----.

1. 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1. (생 략) 2. ~ 9. (생 략) ② ~ ⑤ (생 략)	----- ----- -----.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u> · <u>분양 또는 기증한 자</u> 1의2. 제16조의2제4항에 <u>다른 정보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u>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425